

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(안심상속)

서비스 개요

- 신청방법: 인터넷, 방문
- 신청자격: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(제3자)
- 처리기간: 유형에 따라 다름(하단 참조)
- 신청서: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(별지서식 1호)
- 구비서류: 있음 (하단 참조)
- 수수료: 수수료 없음
※ 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수수료는 별도

기본정보

- 본 민원은 상속인(또는 후견인)이 금융내역·토지·자동차·세금·연금 등 사망자/피후견인 재산을 한 번에 통합 조회 신청하는 서비스

신청자격

- 온라인(정부24):
1순위 상속인(직계비속) 및 사망자 배우자,
2순위 상속인(직계존속) 및 사망자 배우자,
실종선고자 관련 등
- 방문신청:
1~3순위 상속인, 대습상속인, 상속재산관리인,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
- 피후견인 재산조회(방문만):
성년/한정후견인 등

신청시기

-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월 말일부터 1년 이내
-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

신청 방법 및 절차

국세·금융내역·연금·공제회·4대 사회보험료 조회 (총 20일)

1. 접수: 시·구청, 읍·면·동
2. 처리: 국세청, 국민건강보험공단, 금융감독원 등 각 기관

자동차(이륜차, 건설기계 포함) 조회 (즉시/근무시간 내 3시간)

- 접수/처리: 시·구·읍·면·동

토지·지방세 조회 (총 7일)

- 접수/처리: 시·구·읍·면·동

건축물/어선 조회 (즉시/근무시간 내 3시간)

- 접수/처리: 시·구·읍·면·동

제출 서류

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
-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: 신분증, 상속관계 증빙서류
-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: 신분증,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(한정)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
- 재산조회 신청 취소·변경: 신분증, 신청 접수증

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본인정보 제공 동의 시)
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는 담당공무원이 조회 가능
(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동의 여부에 따라 직접 제출 필요)

근거법령

-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
-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

-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5조 (별지 제1호)

담당기관/문의

-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
- 콜센터: 1588-2188 / 02-721-0600 (평일 09:00~18:00)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: 110 (무료, 연중무휴 24시간)

기타 정보/링크

- 신청서 서식(별지서식 1호)
- 신청작성예시

이 스크랩본은 실제 페이지에서 복사한 원문 전체 내용에 기반합니다.
필요시 추가 세부 항목도 정리 가능합니다.

1.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CappBizCD=17400000001&tp_seq=01